[청구인] 〇〇〇

[피청구인] ○○군수

[청구취지] 피청구인이 20○○. ○○. ○○. 청구인에게 한「지목정정 요구 신청 거부」를 취소한다.

[주문] 청구인의 청구를 「기각」한다.

이 유

1. 사건개요

청구인은 20○○. ○. ○○. 국민신문고를 통해 ○○군 ○○면 ○리 ○○○-○번지(전)과 같은 면 ○리 ○○○-○번지(대)에 대하여 ○리 ○○○-○번지(대), ○리 ○○○-○번지(전)로 폐쇄된 공부의 지목 정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.

피청구인은 20〇〇. 〇. 〇〇. 위 신청에 대하여 지목이 잘못 부여되었다고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(이하 '이 사 건 처분'이라고 한다)을 하였다.

이에 청구인은 20○○. ○. ○○.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.

2. 청구인 주장

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가. ○○군 ○○면 ○리 ○○○번지(전)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○○. ○.
○○. ○○○-○번지(전)와 ○○○-○번지(전)으로 분할되었고, 19○○. ○.
지목 오기로 인해 ○○○-○번지(전), ○○○-○번지(대)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므

로, 폐쇄된 지적공부에 ○○○-○번지(대), ○○○-○번지(전)로 지목이 정정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.

나. 19○○년 토지 분할 및 지목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.

3. 피청구인 주장

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가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4조에 의하면,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는 등록사항 정정 신청시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등록사항정정(변경사항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,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권정장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.

나. 청구인이 정정을 요구하는 토지의 경우 20〇〇. ○. ○.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필지로 현재 이용상황과 지목이 일치되어 있으며, 청구인이 신청한 지목정정대상은 지적재조사가 완료되어 폐쇄된 지적공부로 폐쇄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다.

4.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

가. 관계법령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

나. 사실관계

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

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- 1) 폐쇄된 토지대장, 지적도에 의하면, 19○○. ○○. ○○면 ○리 ○○○ 번지가 ○○○-○번지와 ○○○-○번지로 분할되었으며, 같은 해 ○. ○○. ○○ ○-○번지의 지목이 전(田)에서 대(垈)로 변경되어 ○○○-○번지는 지목과 면적이 전(田), ○○○㎡로, ○○○-○번지는 대(垈), ○○○㎡로 기재되어있다.
- 2) 20〇〇. ○. ○. 지적재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작성되었는데, 토지대장에 ○○○-○번지의 지목과 면적은 전, ○○○㎡로, ○○○ 世지는 대, ○○○㎡로 기재되어 폐쇄된 토지대장과 면적 차이가 있으며, 지적도상 두 필지의 위치도 종전과 다르게 기재되어있다.
- 3) 청구인은 20〇〇. ○. ○○. 국민신문고를 통해 폐쇄된 토지대장의 19○○. 경 ○○군 ○○면 ○리 ○○○-○번지(전)과 같은 면 ○리 ○○○-○번지(대)의 기재사항에 대해 오류가 있으므로, ○리 ○○○-○번지(대), ○리 ○○○-○번지(전)로 지목 정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.
- 4) 피청구인은 20○○. ○. ○○. 위 신청에 대하여 지목이 잘못 부여되었다고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원회신 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하였다.
- 5) 청구인은 20○○. ○. ○○.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.

다. 판 단

1) 먼저, 관계법령을 살펴보면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에 의하면, '토지소유 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 청할 수 있다.'고 규정하며,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는 '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'고 하고, 제1호에는 '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: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', 제2호에는 '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: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'로 규정되어있다.

2)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면

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,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므로(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누19033 판결),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나아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·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0. 3. 23. 선고 98두2768 판결).

살피건대,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4조에 따라 청구 인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정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,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청구인 이 정정 신청한 대상 필지의 지목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잘못 등록되어 있다고 판 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(청구인은 19〇〇. 〇. 〇〇., 〇. 〇〇. 토지분할과 지목 변경이 적법한 신청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,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20〇〇. 〇. 〇〇.이 된다).

5. 결 론

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